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319호
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

송파구 문정동 3번지 일대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기한을 연장하고, 같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7월 28일

서울특별시

1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

○ 해제기한 연장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

구역명	위 치	구역면적(㎡)	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	비고
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	문정동 3번지 일대	33,953.7	2024. 7. 19.까지	-

○ 참고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해당기간(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)으로부터 2년간

2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같은 법 제1항제2호의 해당 기간 도래 전 연장 요청한 바,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연장함.

3.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(☎02-2133-7144) 및 송파구 주거사업과(☎02-2147-2903)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320호

도시관리계획(연남동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314호(2011.10.20.)로 최초 결정되고, 마포구고시 제2015-32호(2015.2.26.)로 결정(변경)된 “서울 휴먼타운(연남동)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”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공고 제2020-1289호(2020.10.29.)로 열람공고, 2022년 제3차 서울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(2022.04.21.) 심의, 서울특별시 마포구공고 제2022-887호(2022.07.01.)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연남동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

2022년 7월 28일

서울특별시장

I. 결정취지

2011년 서울 휴먼타운조성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정된 「서울 휴먼타운(연남동)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」에 대하여 휴먼타운 조성사업 완료 및 경의선숲길공원 개장에 따른 주변 여건의 현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「연남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」을 결정(변경)하는 사항임

II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구역명	위 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
			기 정	증 감	변 경	
기정	서울 휴먼타운(연남동)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	마포구 연남동 239-1 일원	82,900.0	-	82,900.0	-
변경	연남동 지구단위계획구역	마포구 연남동 239-1 일원	82,900.0	-	82,900.0	2011.10.20. (서고 제2011-314호)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

구역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연남동 지구단위계획구역	구역명 변경	휴먼타운 조성사업 완료 및 경의선숲길공원 개장에 따른 주변여건의 현격한 변화 반영